#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392

발의연월일: 2025. 5. 7.

발 의 자:이원택・윤준병・김윤덕

이수진 · 송옥주 · 주철현

임호선 · 문진석 · 허성무

임미애 · 이광희 · 이병진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해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이하 "비어업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수량·어구의 종류 등의 포획·채취 기준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법 제18조제1항).

또한, 시·도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시·도의 조례로 포획·채취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법 제18조제2항).

하지만, 최근 전국 연안해역에서 해양레저 인구의 증가에 따라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등 유어 활동도 늘어나고 있고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포획·채취 기준에도 불구하고 일부 비어업인은 야간시간에도 마을어장에서 무분별하게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경우

가 잦아 지역 어촌계와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에 누구나 이용하는 공공용수면에서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 갈등을 해소하고 어업인의 어업권 보호와 비어업인의 안전한 유어 활동보장을 위해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에 지역 특성에 맞는 시간과 장소를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조례 제정 권한을 시·군·구도 포함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법률 제 호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수산자원의 보호"를 "수산자원의 보호 및 안전한 유어 활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수량·어구의 종류 등의 포획·채취 기준"을 "대통령으로 정하는 방법·수량·어구의 종류·시간·장소 등의 포획·채취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로, "그 시·도의 조례"를 "그 시·도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아 혂 행 개 정 제18조 (비어업인의 포획·채취·제18조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판매 등의 제한) 파매 등의 제한) ①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 ① -----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이 하 "비어업인"이라 한다)는 <u>수산</u> ------ <u>수산</u> 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대통 자원의 보호 및 안전한 유어 활 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수량· 동 -----대통령령 어구의 종류 등의 포획・채취 으로 정하는 방법・수량・어구 기준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 의 종류・시간・장소 등의 포획 •채취 기준-----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 ② ------<u>특별시·</u>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 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의 보호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다)-----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시·도의 조례로 포획·채취 기준을 달리 정할 그 시・도 또는 시・군・구의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③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 조례로 포획·채취 기준을 정하| 청장은 ------

거나 변경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비어업인이 알 수 있도록 해양	
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